

법조기자의 어제와 오늘

# 법원 판결은 외면, 검찰 수사만 중시… 검찰 권력에 끌려가는 언론

이범준 / 경향신문 사법전문기자



관련 기사 보기

미디어에 대한 사법기관의 생각은 외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 부소장을 지낸 빈프리트 하세머(Winfried Hassemer) 재판관은 “사법기관에게 언론은 (관악기의) 마우스피스와 비슷하다”고 했다. 사법기관의 결정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뜻이다. 하지만 언론이 사법기관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왜곡한다고 했다. “사법기관이 실제로 하는 일을 터무니없이 뒤틀다.” 이유로는 형사사건에 관한 유난한 관심을 꼽았다. “이런 현상은 좀처럼 바뀌기 힘들기 때문에 그저 참는 수밖에 없다. 언론이 사법기관의 공증인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언론을 통해 사법기관의 결정을 알릴 수밖에 없는데 언론은 선정적인 일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비판이다.

## 검찰 수사 실시간 중계하는 언론

우리나라 사법 분야 보도는 검찰 수사 중계가 주력이다. 언론이 수사 중계에 집중하는 이유는 내용이 선정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권력의 작동방식과도 관련이 있다. 지금까지 정권들은 권력을 정당화하고 보호하려 여러 기구를 동원해왔다. 박정희 시절에는 군대, 전두환 시절에는 경찰, 노태우 시절에는 검찰이었다. 검찰 동원은 김영삼 정부 이후 보편적인 방식이

됐다. 검사의 지위가 정치적으로 급상승한 때도 1990년대다. 다만 노무현 정부는 검찰을 손에서 놓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검찰 이외에 경찰도 동원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스스로 작동하는 권력기구로 성장해 있었다. 언론은 검찰을 감시하지 않고 추종했다. 판결 기사 등 법원 기사는 검찰 기사를 보조했다. 언론은 자신을 검찰과 동일시해 주요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이 아닌 법원을 비난했다. 이 무렵부터 언론은 검찰이 수사를 하면 한다고 비판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비판했다. 기소를 해도 비판, 안 해도 비판했다. 정파적 입장에 바탕을 둔 정치권 비판과 다를 바가 없었다. 비판이 끊이지 않는 것 같았지만 반대편의 지지도 끊이지 않았다. 이렇게 되니 검찰은 사실상 모든 문제에



우리나라 사법 분야 보도는 검찰 수사 중계가 주력이다. 언론이 수사 중계에 집중하는 이유는 내용이 선정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권력의 작동방식과도 관련이 있다. ©연합뉴스

“  
사법부를 다루는 기사는  
논리적 분석이 필수다. 하지만 한국 언론은  
판결이 나온 다음 결과만 비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판의 근거도 찾아내지  
못해 패소한 변호사의 인터뷰에 의존한다.  
하지만 패소한 변호사의 주장은 이미 판결로  
모두 반박된 다음이어서 설득력이 없다.  
”

했다. 그 바람에 역설적으로 현재의 위상이 순식간에 올라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관련된 헌법소원은 재신임 투표, 신행정수도 헌법소원, 대통령 선거중립의무 헌법소원 등 손에 꽂기 힘들 정도로 많다. 애당에서 일으킨 대통령 탄핵 사건도 있다.

## 우리나라 사법 기사 수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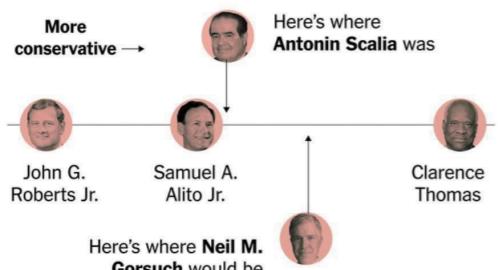
이렇듯 2000년대 헌법재판소를 매개로 사법기관 보도가 본격화됐다. 검찰 수사 중계가 사법 분야가 아닌 사실상 정치 분야 보도인 것처럼 헌법재판소 기사도 정치 분야 기사로 시작됐다. 하지만 언론이 본격적으로 사법기관 보도에 뛰어들지는 않았다. 이는 대검찰청 기자실에 상주하는 기자들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담당하는 점에서도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평소에는 대검찰청 중앙 수사부 수사를 취재하다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일이 생기면 손을 댔다. 같은 시기 대법원은 노동, 여성, 환경 등 사회문제가 사법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이용훈 대법원 시절 ‘독수리 5형제’로 불리던 진보성향 대법관이 나타나면서다. 민주주의가 선거라는 양(量)의 문제뿐 아니라, 토론이라는 질(質)의 문제도 포함한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이렇게 해서 판결 기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사법기관 보도는 어느 나라에서나 논리적 깊이에 의해 수준이 결정된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여론과 선거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데 비해 사법은 논리로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사법부를 다루는 기사는 행정부나 입법부를 취재한 정치적인 기사와 달리 논리적인 분석이 필수다. 하지만 한국 언론은 판결이 나온 다음에야 결과만 비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판의 근거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해 패소한 변호사의 인터뷰에 의존한다. 하지만 패소한 변호사의 주장은 이미 판결로 모두 반박된 다음이어서 별다른 설득력이

## Where Neil Gorsuch Would Fit on the Supreme Court

Where Trump's nominee falls on the court's ideological spectrum.

Jan. 31, 2017



뉴욕타임스 애덤 립택 기자의 기사에 함께 실린 미국 대법관들과 새 대법관 후보 닐 고서치의 성향을 비교한 그림.〈출처-뉴욕타임스〉

없다. 변호사는 자신의 패소를 항변하는 데 언론을 이용하고, 언론은 판결의 결론을 부정하기 위해 패소한 변호사를 쓰는 정도다. 이렇게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판결을 비판해봐야 사법기관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일본 언론의 법원 기사만 해도 우리 언론과는 수준이 다르다. 2013년 9월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형사재판 선고 예고기사가 실렸다. 2005년 효고현 아마가사키에서 JR열차가 탈선해 승객 106명과 운전사 1명이 숨졌다. 유족들은 업무상 과실 혐의로 경영진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업무 관련성이 가장 높은 1명만 기소했다. 유족들이 나머지 3명을 검찰 심사회에 기소를 신청해 기소결의를 받아낸 사건이었다. 기사를 보면 무죄 가능성이 높았다. 검찰이 유일하게 기소한 1명도 무죄가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자는 업무상 과실의 판례를 분석하고, 현재와 같이 범위를 좁혀 잡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무렵 도쿄지검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업무상 과실 혐의를 받던 42명을 불기소했다. 검찰은 “지진이면 몰라도 쓰나미는 예상 밖”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아사히신문 역시 불기소 발표 당일 업무상 과실 사건의 경우 법인을 기소할 수 있게 법을 바꿔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사법 기사의 모범은 미국 언론이다. 2017년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후임으로 닐 고서치 후보자가

발표됐다. 이날 나온 뉴욕타임스 애덤 립택 기자의 기사는 고서치의 거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 같으면 청문회에 임박해서야 위장전입이 있다거나 다운계약서가 있다는 사건 기사로 다뤘을 터이다. 애덤 립택은 고서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으며 다른 대법관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 궁극적으로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했다. 가령 이런 식이다. “하지만 고서치의 글쓰기는 스캘리아와 중요한 점에서 다르다. 스캘리아는 반대자들을 비꼬고 상처를 줬다. 하지만 고서치는 공손하고 부드럽다.” 그러면서 고서치가 대법원에서 어떤 성향을 보일지도 뉴욕타임스는 예상했다.

### 법조기자 출입처 조정부터 필요

한국 언론에서 수사 기사가 하루아침에 줄지는 않을 것이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수사 중계가 인권침해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언론의 수사 중계는 보란 듯이 다시 시작됐고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다. 오히려 문제는 판결 기사가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가이다. 장기적으로는 변호사가 언론계로 진출하면서 기사의 품질을 끌어올릴 것이다. 하지만 로스쿨 도입이 10년째 접어드는데도 아직 사법 기사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는 비판도 법조계와 언론계에서 나온다. 이유로는 언론사가 변호사를 기자로 뽑아놓고도 수사정보를 캐기 바라거나 법률지식을 풀어내는

수준을 요구해서라는 설명이 있다. 이런 요구가 변호사들의 언론계 진입을 막는다는 비판이다. 현재 변호사 자격을 가진 기자의 과반이 기자 출신 변호사다.

단기적인 방법으로 법조기자단 출입처 조정이 있다(출입처와 기자단이 한국 언론의 수준을 떨어뜨린다는 점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 법원 담당과 검찰 담당으로 분리해야 한다. 현재 법조기자단은 크게 세 개의 담당으로 나뉜다. 첫째 대검찰청-대법원-헌법재판소, 둘째 서울지방검찰청-서울고등검찰청-법무부, 셋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이다. 이 가운데 대검찰청 담당 기자의 업무를 해체해 대검은 검찰 담당에게, 대법원과 현재는 법원 담당 기자에게 맡겨야 한다. 그래야 수사와 재판을 일관되게 효율적으로 취재할 수 있다. 물론 검찰에서 법원 담당으로, 법원에서 검찰 담당으로 바꾸는 것은 시야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서울시내 동부·서부·남부·북부 지법과 지검 담당도 사건팀에서 법조팀으로 바꿔야 한다. 사건팀이 법원과 검찰 일부를 맡는 이유에 대해 언론사들은 근접성을 꼽는다. 하지만 근접성이 이유라면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은 강남경찰서 담당 기자가,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는 종로경찰서 담당 기자가 맡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 중요도도 고려 대상이라고 고쳐 말한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이 서울가정법원보다 중요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근본적으로 두 가지 원칙을 섞는 순간 원칙은 없는 것이다. 다른 이유로 사건팀 기자 교육 기능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도 있다. 다른 분야는 제쳐 두고 법조만 교육해야 할 이유도 없고, 법원과 검찰을 피교육생에게 맡겨도 괜찮은 근거도 없다. 더구나 근접성과 교육이 이유라면 서울시내 11개 교육지원청은 사건팀에 맡기지 않는지 모르겠다.

### 사법기관과 여론

사법기관은 언론과 여론의 압력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미국연방항소법원 판사이자 시카고대학 로스쿨 교수인 리처드 포스너(Richard A. Posner)는 이렇게 말했다. “대법원은 하급 법원들보다 여론의 제약을 더 크게 받는데, 이는 대법원의 판결이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 판결을 지켜보고 있음에 기인한다. … 대법원이 대중적으로 외면받는 금진적인 판결을 내릴 경우에는 하급 법원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보다 더 신속하고 격렬한 보복을 불러일으킨다.” 이에 따라 여론의 압력을 긍정하는 대법관도 많다. 샌드라 데이 오코너(Sandra Day O'Connor) 전 대법관은 “우리는 의견을 관철시킬 군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믿는 대중의 신뢰에 의지할 뿐이다. 그래서 대중의 (판결에 대한) 의견과 사법제도에 관한 입장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사법기관도 정치적인 판단을 한다고, 포스너는 말했다. “대법관이 사법 자체의 입장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정치인이다. 그러나 소심한 정치인이다. … 대법원의 역할은 제방이 터질 때까지만 손으로 막고 버티는 데 그친다. 만약 여론이 압도적으로 형성되면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대법관도 손을 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대법원을 감시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이 헌법 사건을 판결할 때 정치적 법원이 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최소한 대법원이 헌법이론의 성격이 주관적이고 또 그 토대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이를 통해 대법원의 권한 행사가 제한받기를 희망할 수 있을 것이다.” 언론의 판결 비판은 이론을 넘어야 한다는 포스너의 말도, 한국 언론의 기사처럼 낮은 수준을 전제한 것은 아니다. 법조기사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지 않으면 이 나라 민주주의의 수준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